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29호(2022.02.07)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잔돈투자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적립하는 서비스(이하 "잔돈투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 간의 "잔돈투자"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적용)

- ① "잔돈투자"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는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② 출금계좌의 경우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 받고, 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 규약 및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금액"이란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별도로 정한 "잔돈투자" 조건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투자금액" 계산 조건의 종류는 [별지1]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② "잔돈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으로 구성됩니다.
1. "결제잔돈"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등 각종 결제와 연동한 투자 서비스
  2. "통장잔돈" : 지정한 계좌의 잔액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투자 서비스
  3. "미션잔돈" :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투자 서비스
- ③ "출금계좌"란 "잔돈투자"를 위해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말합니다.
- ④ "투자상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잔돈투자"를 통해 투자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별지2]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 ⑤ "결제회사"는 결제 내역 등 "결제잔돈"의 "투자금액" 산정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은행"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액" 등 "잔돈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업체 등을 말합니다.

#### 제4조 (가입대상)

- ① "잔돈투자"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외국인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② "잔돈투자" 가입 대상은 "은행"이 실명 확인한 "투자상품"을 정상적으로 보유한 "이용자"에 한정 합니다.
- ③ "결제잔돈" 가입 대상은 "결제회사"의 신용카드 등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에 가입 및 "은행"의 요구불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이용자"에 한정 합니다.

#### 제5조 (서비스 가입 및 변경, 해지)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잔돈투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결제잔돈", "통장잔돈", "미션잔돈"을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 ③ "이용자"는 "잔돈투자" 이용 중 "투자금액"의 계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잔돈투자" 이용 중 "투자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투자상품"과 "잔돈투자"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서비스 내용)

- ① "이용자"는 "은행"이 운영하는 "잔돈투자" 내에서 "투자금액" 계산조건을 지정해야 하며, "출금 계좌" 및 투자대상 "투자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잔돈투자"에서 "투자상품"은 각 서비스 별로 달리 선택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계좌만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투자금액"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출금계좌"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적립합니다.
- ③ "은행"은 "잔돈투자"의 투자 또는 적립 처리 시점에 "출금계좌"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실패"로 분류하고, 재처리 하지 않습니다.
- ④ "결제잔돈"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추가 절차를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 1.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투자금액" 계산조건을 "결제회사"에 제공
  - 2. "결제회사"는 "투자금액" 관련 기반정보와 계산금액을 "은행"에 제공
  - 3. "은행"은 "결제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출금계좌"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투자상품"에 투자 또는 적립 실행

## 제7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잔돈투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는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인(신용)정보 등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잔돈투자"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잔돈투자"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9조 (투자금액 확인)**

"이용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은행" 및 "결제회사"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유의사항)**

- ① "잔돈투자"가 완료된 경우,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조건 또는 지정된 "투자상품" 등이 사후에 바뀌더라도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② 다음 각호에서 정의한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투자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상품"으로 "잔돈투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결제잔돈" 및 "통장잔돈" : "출금계좌"의 대출약정한도를 제외한 지급가능잔액
  2. "미션잔돈" : "출금계좌"의 대출약정한도를 포함한 지급가능잔액
- ③ 공휴일, 해외승인, 대중교통 등 기술적인 이유로 "투자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일부 결제 건에 대하여는 "결제잔돈"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결제잔돈"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결제 항목을 홈페이지 및 앱(App)에 게시합니다.
- ④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 법적 조치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출금계좌"에서 투자는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은행"과 "결제회사"는 "잔돈투자"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잔돈투자"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CI, 약정여부 등)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통지 등)

- ① "은행"과 "결제회사"는 "잔돈투자" 관련 정보를 각자 보관·관리하며, 각자의 책임으로 "이용자"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를 합니다.
- ② "은행"은 "잔돈투자"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공지사항은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PUSH 메시지, 카카오톡, 기타 SNS 등)를 통하여 안내하며, 서비스 제공 관련 중요한 안내 사항은 제16조 약관의 변경절차를 준용합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잔돈투자"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잔돈투자"가 중단

되는 경우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잔돈투자"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결제회사"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오류 수정으로 "투자금액"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4조 (수수료)**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별도로 무선 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16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7조 (분쟁조정 및 관할 법원)**

- ① “이용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따른 “잔돈투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8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별지1]

“투자금액” 계산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방식 별로 “출금계좌”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잔돈”의 신용카드를 선택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시점마다 발생한 1천원 미만의 잔돈을 계산하여, 이를 일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다음날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출금계좌”는 “잔돈투자”를 위해 선택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 중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투자금액” 계산의 대상으로 합니다.

### 2. “결제잔돈”의 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 체크카드 결제 시점마다 발생한 1천원 미만의 잔돈을 계산하여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출금과 동시에 “투자금액”을 별도 출금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출금계좌”는 “잔돈투자”를 위해 선택한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로,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 중 체크카드 결제한 내역을 “투자금액” 계산의 대상으로 합니다.

### 3. “결제잔돈”의 간편결제를 선택한 경우

- 간편결제 결제 시점마다 발생한 1천원 미만의 잔돈을 계산하여, 이를 일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다음날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출금계좌”는 “잔돈투자”를 위해 선택한 간편결제의 연결계좌로, 간편결제의 연결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 중 간편결제 결제한 내역을 “투자금액” 계산의 대상으로 합니다.

### 4. “통장잔돈”의 “매일”을 선택한 경우

-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의 잔액을 매일 자정(24시)에 확인하여, 그 중 1천원 미만의 잔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 자정의 계좌 잔액만 “투자금액” 계산의 대상으로 합니다.

### 5. “통장잔돈”의 “매주”를 선택한 경우

-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의 잔액을 매주 금요일 자정(24시)에 확인하여, 그 중 1만원 미

만의 잔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6. “미션잔돈”을 선택한 경우**

- “은행”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개별 미션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직접 등록한 미션의 설정 내역(종류, 주기, 금액 등)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하나원큐’ 모바일앱에서 선택한 미션의 “달성” 등록할 때마다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7. 기타 :** “이용자”가 “투자금액” 계산조건 설정 시 “은행”이 설명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방식

## [별지2]

“잔돈투자”를 통해 예탁금 계좌에 적립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정책 및 약관은 해당 상품의 정책과 약관에 따릅니다.

### 1. 원화 투자 펀드(온라인 전용)

※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신규한 경우 제외

※ 하이로보 등 다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거나, 계좌 특성상 잔돈 투자가 부적합 한 경우 제외